

■ 대학설립·운영 규정 [별표 4] <개정 2023. 9. 19.>

교지기준면적(제5조제1항관련)

(단위 : m²)

학생정원	400명 이하	400명 초과~1,000명 미만	1,000명 이상
면 적	교사건축면적 이상	교사기준면적 이상	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

비 고

1. "학생정원"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학생정원을 말한다.
2. "건축면적"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건축면적을 말한다.
3. 위 표에도 불구하고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위 표에 따른 교지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않는다.